# 2018년도
# 특수교육 운영계획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특수교육정책과

# 목차


Ⅰ |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1

1. 특수교육기관 확충 3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6
3.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8

Ⅱ |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11

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3
2.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6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18
4.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20
5.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23
6. 특수교육보조원 운영 지원 25
7.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 28
8.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30
9.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33
10.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36

Ⅲ |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39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41
2.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44
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48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 기축 50

Ⅳ |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55

1.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57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59
3. 장애학생 안전 강화 62
4.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64
5.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68
6.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70

Ⅴ | 2018년도 특수교육 관련 행사 73

1. 특수교육 관련 행사 75

# 비전·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

**비전**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추진 목표**

- 국가책무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

**중점 추진 과제**

1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3 진로 및 고등 · 평생교육 지원 강화

4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추진 체계**

가정-학교-사회 간, 관계부처(기관) 간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 Ⅰ.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Ⅰ.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1 특수교육기관 확충

**추진목적**

◎ **원거리 통학 및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여건 개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정과제 51-2 (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

###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 **'18년 특수학교 3교, 특수학급 250학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

-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교(급) 수요를 고려한 **중장기 신·증설 계획*** **수립**

  * **특수학교**(총 22교 신설): ('17) 174교 → ('22) 196교
    **특수학급**(총 1250학급 확충): ('17) 10,325학급 → ('22)11,575학급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설립 시, 특수교육대상자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 2) 특수학교(급)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특수학교를 우선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특수학교가 계획대로 원활히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특수학교 설립 시, **학교용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추진 검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학교 포함

-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검토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특수학교 우선 승인 내용 포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특수학교 우선 반영 내용 추가

- **학교 규모에 따라 부지면적을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의 기준면적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특수학교 신설 시, 체육관, 도서관, 공연실 등 **복합공간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학교 신설비 교부기준 상향 조정**

■ **특수학급**의 경우, **별도의 학급당 신·증설비 및 전환비 교부기준 마련**

### 3) 특수학교(급) 설립의 다양화·특성화

■ 12학급 이하의 **작은 규모·단일과정*** 특수학교, **특화된 분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 등 **설립 추진**

  * **주요 형태**: (유), (초), (중), (고), (유+초), (유+초+중), (중+고+전공과), (고+전공과) 등
  ** 특성화 고등학교(특수교육대상자 대상)와 같은 **직업교육 중점모델** 등

■ **대학 부속 또는 병원 내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 추진

- 시·도교육청, 대학과 협의하여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국립대학교 내 부설**

  ※ 특수교사 양성 대학(국립 6교, 사립 33교) 중 부속학교 8개(국립은 없음)

- **어린이 재활병원 내 특수학교 설립 등** 추진

- **초·중·고등학교 내 특수학교를 함께 설립**하여 **운동장, 체육관 등을 공유**하고, **통합교육을 운영**하는 형태 고려

■ 유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 **통합유치원**은 모든 일과를 완전 통합하여 유치원 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 담임 및 협력교수 형태로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1:1로 운영

  ※ '17) **통합유치원** 1개, **유치원 특수학급** 731개

■ **지역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 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 등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운영

  ※ '17)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13학급(초등 7학급, 중등 6학급) 운영 중

- **예술, 체육, 진로와 직업 등 특정 분야**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성화된 학급 설치·운영**

※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분야 중점 특수학급**(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48교)을 운영 중이며, 예술·체육 분야에도 확대 추진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각 교육청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정원, 급당 평균인원 등에 대한 실태파악 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충 자체 계획 수립(중장기 계획 포함)

- 관내 공·사립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및 추진

② **특수학교(급) 신·증설**에 필요한 학교용지 및 소요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

- 특수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고가의 부지매입비 소요 등을 대비하여 택지개발예정지에 학교용지 확보 등 **다양한 방안 고려**

③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신설 시, 특수교육대상자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④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을 위한 공립 단설 유치원 및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확대

##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추진목적**

-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제고**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사 처우개선 및 특수학급 담당교원 부장교사 배치 확대를 통한 직무 만족도 향상**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동법 시행령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 1) 특수교사 배치 개선

■ 시·청각장애 특수학교에 한국수어통역사(교육용 수어능력 평가·인증 교원 포함), 점역·교정사 등 특수교육 관련 자격소지 교원의 우선전보 및 전보유예 확대 권장

■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의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등 권장

■ 도서지역, 읍·면 단위에 속한 특수학교(급)에 정교사 우선 배치

### 2) 예비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 특수교사의 장애유형별 교수 능력 신장을 위해 특수교사 선발 시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수어, 점자 등)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적극 권장

- 장애영역별 전문성을 고려한 특수교육교원 배치 권장

■ 현직교사 중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점역·교정사, 한국수어통역사, 한국수어능력 인증자 등) 소지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특수교사의 전문 역량 강화

* 승진가산점 부여, 시·청각장애 특수학교 우선 전보 등 시·도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적용

■ 특수교육교원의 교과별 수업* 전문가 양성 및 장애특성별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교육과정 적용 및 수정, 교과별 교수-학습 방법, 교과별 교재교구 활용, 장애 특성별 교과 지도 방법 등

** 긍정적 행동지원, 보완대체의사소통 지도, 통합교육지원 역량 강화, 점자지도 및 보행훈련 지도, 교육용 수어능력 평가·인증 등

■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확대

- 특수교육대상유아 담당 특수교육교원, 특수학교 영아학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대상영아 교육 담당자 연수 실시
-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해당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조하여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소속 직원 연수 희망 조사 및 실시

■ 교실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등 적극 권장

- 시·도교육청별, 단위 학교별 교사학습공동체 조직을 통해 수업과 교육과정을 함께 연구하면서 교실 수업 개선* 추진

  * 특수학교(급) 여건에 적합한 수업모델 개발 및 적용 등

- 교사 간 정보와 자료 공유, 연구 등을 위한 자생적 특수학급 수업연구회 운영 활성화 지원

###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강화

■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사 처우개선 및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의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등 권고

②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교원의 교과지도, 특수교육 핵심영역 및 장애유형별 역량 강화 연수 지원

③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교원 연수 지원

-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 특수교육교원, 통합교육 담당교원,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소속 특수교육대상자 담당 직원 연수 실시

④ 국립특수교육원의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 교육용 수어지도 역량 강화(기본, 심화) 연수 과정에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협조

⑤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 3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추진목적**

**각급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로 교육권 보장 및 학력 신장**

* 각급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안전 및 편의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1)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방안 마련

- 학교단위 평가 시 특수교육대상자가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평가조정 적용
- 특수교육대상자 **평가조정 현장안착을 위한 안내 및 현장지원 강화**
- **일반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평가조정 연수를 확대하고, 평가조정 우수사례 공유**

  **※ '장애학생 평가조정 매뉴얼(국립특수교육원, 2016)' 적극** 활용

- 통합학급의 평가에 참여가 어려운 **중도·중복장애 학생,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평가* 방안 마련**·적용

  * 문항의 제시형태, 반응형태, 검사시간 및 환경 등의 조정으로도 일반학교 평가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또는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방법을 다르게 하는 등 방안 마련

■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등 **보조공학기기 대여 시스템 구축**
- 특수교육대상자 및 담당교사가 보조공학기기를 교수·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문교육 등 현장 지원 강화

  ※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운영 매뉴얼(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 2017)' 적극 활용

■ 학교별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 지원 등 통학지원 대책 마련

※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입차량 지양 및 운전원과 보조인력 대상 연수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2) 각급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구축

- 유치원 및 학교 신·증축 시 '장애물 없는 환경(BF)' 인증 의무 준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15.7.시행)

■ 장애학생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추진

* 적정설치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설치기준을 전부 충족하여 설치한 비율

단순설치율 : 설치기준에 미달하였으나,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한 비율

-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 개선을 위한 실태점검* 및 예산확보

* 교육부 점검 및 시·도교육청 자체점검

- 유관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등) 협력을 통한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관련 자문, 실태점검 및 담당자 교육 실시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평가조정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9호(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철저

② 특수교육대상자 학력평가 및 평가조정 지원을 위한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

③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수요를 고려한 지원 예산 확보 철저

④ 안전 및 편의시설 개·보수 수요 파악을 위한 시·도교육청 자체점검 실시

⑤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준수하여 적정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예산 등 관련부서와 협조

# Ⅱ.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Ⅱ.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추진목적**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통합교육 내실화**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유아 통합교육 여건 개선**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국정과제 51-2(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순회교육 등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
-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 조정, 정기상담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 강화
-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습장애 학생이 조기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다양화
- 통합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학급 정원 감축 조정**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학급정원 1~3명 감축

■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중심 전문가 인적자원 활용** 확대

-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학 등의 **통합교육 지원 인력풀 구축** 및 협력체 구성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적응력 및 학력 신장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

  * 대학생 등 멘토가 초·중·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를 1:1로 지원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기관**(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학급 정원 감축 조정, 특수교육 보조인력 확충, 방과후 과정을 담당할 인력 추가 배치 등 지원 확대**

### 2)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상담 및 정보 지원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을 위한 지역 기반 **정보지원 시스템 운영**

■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중복장애, 자폐성장애 등

※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17) 42개소 → ('22) 50개소

-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전문적 교육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특수학교를 거점지원센터로 지정·운영**
- 거점지원센터에 장애유형별 전문적 지원을 위한 청능훈련, 보행훈련, 수어통역, 점자지도 등 **전문인력 우선 배치**
- 효율적인 통합교육 지원인력 운용을 위한 거점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특수학교, 장애인단체, 점자도서관, 수어통역센터 등

### 3)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 특수·일반교사 협업을 통한 유치원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특수·일반 교사의 특수교육대상유아 정보공유, 협력교수 등 협업 강화

※ **'유치원 통합교육 가이드북**(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2017)', **'장애영아 교육 및 장애유아 통합교육 우수사례집**(교육부·전라북도교육청, 2017)' 적극 활용 안내

■ 특수·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 '정다운학교'에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우선 배정하고,** 협력수업 등 **다양한 협력 모형 개발·운영**

  ※ 정다운학교 운영: ('18) 17교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보급**

  ※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 가이드북**(교육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7)' 적극 활용 안내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순회교육 등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

② 통합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학급 정원 감축 조정 방안 마련

③ 특수교육대상유아 정원 내 배치로 통합교육 환경 여건 개선

④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에 필요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을 담당할 인력 지원

⑤ 시·도교육청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별 또는 권역별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⑥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에 청능훈련, 점자지도 등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 2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추진목적**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자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 향상)

###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 **일반학교** 근무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

- 시·도교육청별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장애인 인권보호 관련 내용 포함) 확대

  * 일반학교 관리자(교장)는 매년 집합연수(워크숍) 3시간 이상 이수** 권장

  **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를 위한 신규 지표 반영 예정

  ※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권장 이수시간은 60시간(누적치 인정) 이상

- 자격 연수과정에 장애이해(인권보호 포함) 및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1개 이상 포함하여 운영

- 국립특수교육원의 일반학교 관리자 및 교사 대상 연수과정에 참여 적극 권장

- 순회교육 및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 통합학급 담당교사는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이수자 우선 배치

■ **통합교육 및 장애공감문화 관련 연수** 과정 개발·운영

- 관리자, 일반교사, 특수교사를 위한 **통합교육 연수 콘텐츠 개발**

  ※ 집합연수와 원격연수 혼합과정(blended learning) 권장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장애공감문화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콘텐츠 개발 및 원격 연수 운영*

  * 원격연수 개발·운영: ('18~'19) 콘텐츠 개발 → ('20~'22) 4,000명 이수

■ **예비교사 통합교육 소양 강화**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예비교사 교육실습 시, 통합교육 관련 교육실습 적극 권장

## 2)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 교사 연구회 권장 및 우수 연구회 발굴

※ 교사연구회 : 교과연구회, 개별화교육연구회, 행동지원 연구회 등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통합학교 관리자가 연 3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집합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연수과정(워크숍 포함) 지원

② 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제공 확대 및 학년 초 장애이해 관련 워크숍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의 통합교육 관련 원격교육연수 과정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③ 통합학급 담당교사 배치 시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연수 이수자 등 우선 배치

#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추진목적**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 1) 지역 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군별 **30% 범위**, **공통 교육과정**은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가능

■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정 교과(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를 중심으로 **중점학교 운영 지원**

※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해당 교과로 편성하되, **체육, 예술(음악, 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음**

##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일반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편성·운영

## 3)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 내실화 지원

■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발달단계・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자료 지원

## 4)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및 교수·학습자료 지원 확대

■ **교육과정 적용 연도에 따른 교과용도서 연차적 개발**

※('15~'16) 교과서 및 지도서 74책, 전자저작물 30종→('16~'17) 98책, 33종→('17~'18) 31책, 8종

■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보완자료 및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 5)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조치 지원

■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연차 적용*되는 교과용도서 및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도 증진을 위한 **현장 교원 워크숍** 개최

*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 시기**

| 구 분 | 적용 학년 | 특수교육 전문교과 |
|---|---|---|
| 2016학년 | 유치원 | |
| 2017학년 | 초1~2 | |
| **2018학년** | **초3~4, 중1, 고1** | **고1** |
| 2019학년 | 초5~6, 중2, 고2 | 고2 |
| 2020학년 | 중3, 고3 | 고3 |

■ 시·도교육청 단위,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이해도 제고 및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특수교육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시 . 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 시 · 도교육청은 관할 지역 내 국립특수학교도 포함하여 특수학교(급) 컨설팅 장학 실시

②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일반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교육 지원 계획 포함**

③ **장애영아 교육과정 및 전공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장애영아 교육과정 및 전공과 교육과정 지침 상세화 및 학교수준 관련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지원

④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수 · 학습 자료 지원**

⑤ 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중점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지원**

⑥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수 강화**

# 4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추진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와 교육요구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평가 및 적합한 교육환경 배치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25조(순회교육 등)

## 1) 순회교육 지원 범위

■ 각급학교,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자중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파악하여 순회교육 지원 철저
- 병원학교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전담인력* 배치 및 순회교육 지원 등 교육 지원 강화

  *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교사 등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영아를 위한 순회교육 지원(보건복지부의 무상보육료와 중복지원 불가)

  ※ 지원범위 및 내용은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결정

  ※ 순회교사,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활용

##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p.22 순회교육 운영방안 참조)

## 3) 순회교육 담당자 연수 강화

■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방법 및 가족지원 방법 등에 관한 연수 강화

###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이동 곤란 등 특별한 사유를 지닌 학생에 한해 순회교육을 지원하고, 통학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에 출석하도록 유도

※ 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중 학교교육이 가능한 학생은 특수학교(급), 일반학급으로 재배치

②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가정, 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영아 순회교육 제공

③ 순회학급 설치 및 순회학급 담당교사 배치

④ 순회학급에도 교재·교구 구입 등을 위한 학급 운영비 지원 및 담임 역할 수행

⑤ 순회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 순회교육 운영방안 ◇

## 1. 운영 방침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 실시

○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순회교육 실시

○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순회교육 실시

## 2. 학급 편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에 의해 편성하되 거주지별, 시설별로 학년통합 편성 가능

## 3. 교육과정 운영

○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

○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

※ 본 운영방안을 참고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 5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추진목적**

◎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등 지원의 다양화**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2조(개별화교육),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1)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 시설 접근성,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한 **공간 및 위생시설,**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공학적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심리안정실 등) **구축**

■ **학급당 학생 수 하향 조정 등** 개인별 맞춤 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 2)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특수학교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급은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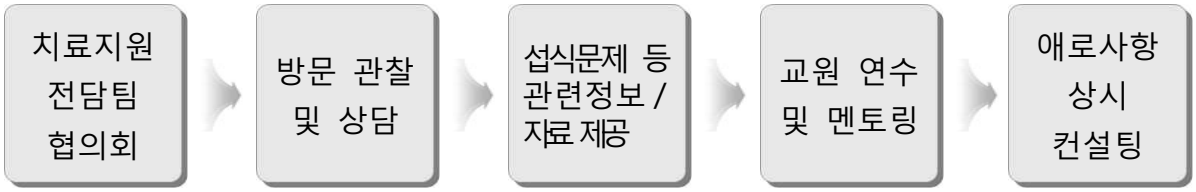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진로 및 직업교육 등에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교사 대상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도 **전문성 증진 연수** 실시 및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위한 치료지원전담팀 구성·운영

■ 시·도교육청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지원전담팀*'을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 컨설팅 제공**

*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서 **의사, 관련학과 교수,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 운영**




■ 학교가 **의료기관, 대학,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연계망 구축**

■ 시·도교육청은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교사의 상시적 의료조치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한 **인력 배치** 고려

※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에 필요하고 의사 진단서에 기초한 경우,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교사가 가래흡인과 같은 의료조치 등에 대한 편의 지원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17)

■ 단위 학교는 **교과교육 외에** 의학적 상담, 치료지원, 가족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의 심리·물리적 상태에 대한 **지속 점검** 실시

■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교사와 협력, 의사 및 관련 전문가 등**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연계 지원 강화**

**※ 심각한 상황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위기관리계획 수립**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수준(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

※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중장기 교원 및 지원인력 수급 계획, 관련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 개발 및 보급, 시설·설비 정비 및 확충, 교육과정 컨설팅 및 연수 확대,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과정 시범학교 운영 및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 등

②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 계획 수립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치료지원전담팀' 구성·운영**

③ 지체중복장애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대학,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치료지원 연계망 구축 지원**

# 6 특수교육보조원 운영 지원

**추진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신변처리, 급식, 등하교 등의 교내외 활동을 보조하는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참여 기회 확대**

※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동법 시행령 제25조(보조인력), 동법 시행규칙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 1) 특수교육보조원 운영·관리 강화

■ 특수교육보조원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 학생 우선 지원

■ 특수교육보조원 채용 시 성범죄 등 범죄이력 조사 철저

■ 특수교육보조원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업무 명확화

※ 정책연구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강화 방안'(교육부, 2014) 참조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주요업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방과후 활동, 등하교 지도 등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

- (교수·학습활동)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 (개인욕구)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정생활 지원
- (적응행동)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 행동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형성 지원,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 교사의 고유 업무인 수업·학생지도·평가·상담 등을 대신할 수 없음**

■ 특수교육보조원 업무평가(근무성적평정 등) 철저 및 업무일지 작성 강화

■ 특수교육보조원 순환근무제 확대 추진

## 2) 특수교육보조원 역량 강화

■ 신규 채용 인력의 경우 30시간 이상 직무연수 의무 실시(본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 원격연수 포함)

※ 연수내용 : 장애학생 인권보호,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보조 방법, 복무규정 등 (정책연구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강화 방안'(교육부, 2014) 참조)

※ 신규 채용된 보조인력은 채용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직무연수 실시 권장

■ 특수교육보조원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 연수 실시·확대

- 장애특성을 위한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법 및 직무능력 향상 연수 실시 (점자, 보행지도, 수어, 보조기기 관리, 정보화 지원 연수 등)
- 교육현장 관계자 역할 이해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관련 연수* 실시

* 교육현장 관계자(학교관리자, 특수교사, 일반교사, 학부모, 보조인력 등) 간 상대의 역할을 이해하고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함께 참여하는 연수 개설 권장

- 현재 배치 중인 특수교육보조원 직무 향상을 위해 교육청 또는 단위학교별 연 1회 이상 특수교육 관련 직무교육 실시 권장
- 시·도별 특수교육보조원 운영계획 내 '특수교육보조인력 직무 역량강화 계획'을 포함할 것

※ 국립특수교육원부설원격연수원의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강화 과정' 사이버연수 적극 활용

## 3)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운영 다양화

■ 지원대상의 성별, 연령 및 장애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 배치

■ 재능기부 등을 통한 자원봉사 영역 및 지원 인력 확대 노력

- 특히, 병원학교의 경우 교육감(장), 학교장 등의 협조를 구하여 인근학교 현직교사 자원봉사자 확보 노력

■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실시 의무화

- 교육(지원)청 단위로 신규 배치 3개월 이내에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장애이해 관련 내용 포함) 반드시 실시

※ 학교(급)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신규배치 1개월 이내 실시

### 시 . 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확대 및 운영 관리 철저

- 중증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확대
- 교육청 순회 및 시간제 특수교육보조원 채용 등 운영방법의 다양화 노력
-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보조원 운영 지침 마련 및 특수교육보조원 배치기관 교직원 대상연수 강화
  ※ 신임교사 연수 시 특수교육보조원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안내
-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보조원(사회복무요원 포함) 자체 연수계획 수립·시행
  ※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 보조인력 역량강화(기초, 심화, 고급) 원격교육연수 과정 적극 활용 권장
- 특수교육보조원 업무평가 철저(학기별 1회) 및 업무일지 작성 강화
- 특수교육보조원 순환근무제 확대

② 사회복무요원 배치 확대 및 운영 관리 철저

- 사회복무요원은 남학생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여학생 지원에 따른 민원발생 예방
- 사회복무요원 배치 관련 규정 준수 확인 철저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4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정 제한)**

1.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 영 제1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3.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신경과의 경련성 질환 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5. 영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군복무적응곤란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및 기관별 복무관리 강화

# 7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운영의 내실화

**추진목적**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특수교육 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 IEP 작성 시 일반교육교원, 학부모 참여 및 충분한 안내와 의견수렴 절차 준수

※ 단위 학교별, 학년별 개별화교육지원 관련 부모교육 실시 강화

■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시 그 지원 사항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 작성

■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 매 학년 시작일 부터 2주 이내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매 학기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시 일반교육교원의 참여 및 역할 확대

### 2) 다양한 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 등을 활용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교육과정 및 교과의 특성, 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른 다양한 학생집단 편성 활용

■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사조직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 (특수교육보조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활용 확대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일반교육교원, 학부모 참여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 준수

② 인근 특수학교(급)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관리 강화

③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시 일반교육교원의 참여 및 역할 확대 방안 강구

④ 일반교육교원과의 협력교수 등 다양한 교사조직 활용 방안 강구

⑤ 교사자율연구회 운영 지원, 학교급별·교과별 개별화교육 관련 우수사례 공유

⑥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현황 점검 강화

⑦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관련 연수·컨설팅 장학 강화

# 8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추진목적**

-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 **개별화된 학습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도모**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5조(순회교육 등),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동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 1) 만성질환 학생 중 해당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교육지원 제공

■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 화상수업과 온라인수업(한국교육개발원 운영)으로 구성

※ 건강장애 선정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개별학생의 교육적·의료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선정 후 상급학교 진급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재심사)

■ 건강장애 선정절차 과정 중에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 先교육 지원 가능

■ 전국병원학교 홈페이지 활용 안내(http://hoschool.ice.go.kr) 및 홍보 강화

※ 병원학교 안내 및 관련 자료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병원학교 관계자 업무 참고, 정보 공유 및 일반국민 대상 홍보 시 활용

## 2) 시·도교육청별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지원 내실화

■ 건강장애학생의 원인별 유형이나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병원학교 운영

※ 운영체제 : 병원학교 자체 운영, 교육청 소속 운영 등

■ 병원학교 설치·운영에 대한 행·재정지원 홍보 및 해당지역 종합병원과 적극 협의를 통해 병원학교 설치 운영

※ 병원학교 설치 수('18년 33교) : 서울(10), 부산(4), 대구(3), 인천(1), 광주(1), 대전(1), 울산(1), 경기(1), 강원(2), 충북(1), 충남(3), 전북(1), 전남(2), 경남(3), 제주(1)

■ 주책임 의료진에 '명예교장' 역할 부여 및 병원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운영

■ 학생의 건강 특성, 희망 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 운영 방법을 강구하고, 위탁교육의 경우 신학기 이전에 해당 지역 및 기관에 위탁여부 통보

### 3)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 강화

■ 건강장애학생 교과교육·심리적응지도 등을 위한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 강화

■ 보건실, 도서실 등에 건강장애학생 이해 자료*를 상시 비치

* 병원학교 이용 매뉴얼 등 병원학교 홈페이지 자료 활용

### 4) 건강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 건강장애학생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기관별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 교육청별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의무화를 통해 복귀 후 학교적응력 신장 및 학업격차 최소화 등 건강장애학생의 안정적 학교 복귀 지원

※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시 건강장애학생의 소속학교 교원 및 또래를 포함하여 운영

(예시)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학교 출석 체험 프로그램 등

### 5)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 '18년 '학교생활기록 기재 요령' 사항을 반드시 확인

■ (학적)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 (출결) 소속학교 출결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을 포함하여 처리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은 해당 기관의 출결확인서를 따름

※ 초등학교는 1일 1시간 이상, 중·고등학교는 1일 2시간 이상 위탁교육기관 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 인정

■ (평가)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관리 등에 관한 소속학교 담임교사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 운영

**시 . 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시 · 도교육청별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계획 수립('18. 2월)

② 시 · 도교육청별 병원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건강장애학생 학적 관리 및 원격수업 이용 방법을 안내하여, 건강장애학생 지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

③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병원학교, 원격수업 활용 및 순회교육 제공 등을 통해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④ 일반 및 특수교육교원 연수에 건강장애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홍보 강화

⑤ 병원학교를 협력기관으로 선정하여 현직교사, 교원양성 대학 예비교사 등의 자원봉사자 확보 노력

⑥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의 교사와 학생, 특수 및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 증진」을 위한 자체연수 실시 및 건강장애학생 선정 홍보 강화

⑦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보호자 등의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9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추진목적**

- **전담인력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로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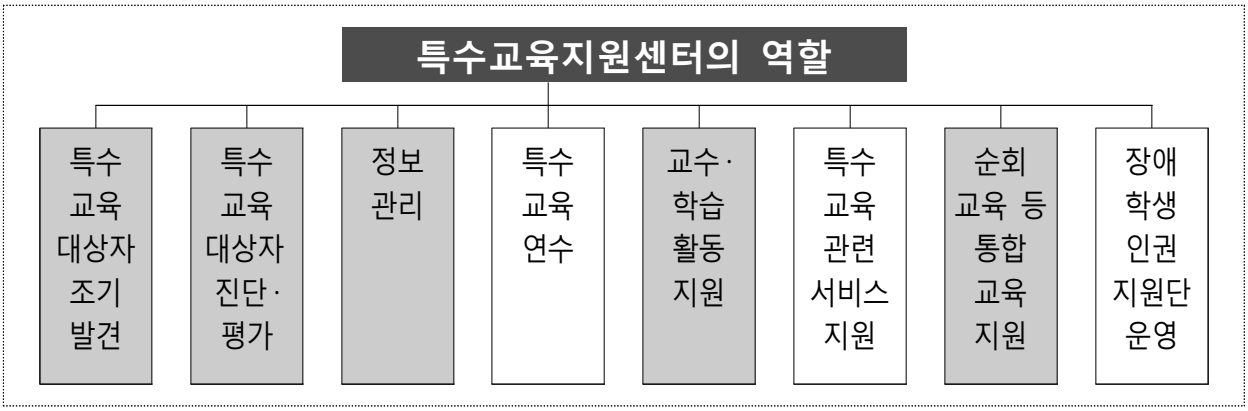
※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동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전문직**, 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직원**, 전문**상담 및 통합교육 지원 등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전문직, 전문상담사 등 전문인력 배치: ('18～'22) 200명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승진가산점 및 전보가산점 부여, 전문성 신장 기회 우선 제공, 유연근무제 인정 등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자 및 교육전문직 연수**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등 담당인력의 맞춤형 연수*** 확대

* 진단·평가, 보조공학, 의사소통, 부모상담 등

## 2)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 기능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지역 여건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전문적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특성화*하여 운영

  * 진로·직업교육, 시·청각장애교육, 장애영유아교육 등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제공 및 통합교육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 일반학교 배치(일반학급, 가정, 시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등 특수교육 지원 계획 수립·운영

■ 특수교육대상영아 지원을 위한 진단도구, 교재·교구, 부모 지원 및 무상교육 운영 프로그램 등 마련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치료지원 강화**

  ※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우선 지원, 1인당 지원 단가를 더 높게 책정**하는 등 적극적 지원 대책 마련

-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청능훈련 등 **장애특성별 조기집중적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학교·교육지원청별로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특수교육대상자와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운영

-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국 167개소 설치·운영

##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복지관, 직업교육 유관기관 및 산업체 등 의료·교육·보육·직업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적 자원 활용 강화

■ 주민센터, 시·군·구별 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와의 교류 등을 통해 지자체 운영·지원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활용

■ 특수교육교원 양성대학 등 인근 대학 및 지역 내 인적 자원과 연계하여 자원봉사 인력 활용

■ Wee 센터 등 교육지원청 내 센터 간 업무 협력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강화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시·도교육청별 관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수요, 역할,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기준과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

②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및 행정지원 인력 확보

* 전문상담사, 청능훈련사, 한국수어통역사, 점자·보행지도사 등

③ 일반학교 교직원 대상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홍보, 특수교육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을 위한 협조 체계 구축

④ 지역 내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등 교원 자원 활용을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⑤ 순회교육 제공, 진단·평가, 상담, 각종 지원 계획 수립 및 기록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리 철저

⑥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활성화 및 현황점검 철저

⑦ 시·도교육청별 치료지원 계획 수립·시행

- 치료사를 배치하여 지원하는 시·도교육청은 치료사에 대한 자체 연수계획 수립·시행
- 치료지원 및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현황 조사('17. 5월)

⑧ 치료지원 제공기관 현장점검 강화

- 치료지원대상자가 무자격 치료사, 무허가 치료실에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치료지원 제공기관 명단 파악 및 현장점검 강화

# 10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추진목적**

**장애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의 소질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 실현**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체육진흥법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 확대를 통한 장애학생 1인1기(技),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 동아리 지원 강화

* 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할 수 있는 환경(인력, 시설 등)을 갖춘 특수교육기관(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등)

**<참고>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예시)**

- ▶ 장애학생 악기(오케스트라), 성악 또는 합창 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관람 등
- ▶ 장애학생 미술, 연극 프로그램, 댄스동아리 등 지원

※ 비장애학생과의 통합 문화예술 체험 활동 및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노력

■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 활용 및 유관기관, 문화예술인 재능기부 등을 통해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체험 기회 제공 및 문화향유권 확대

- 문화예술센터, 미술관,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원 확대
- 시·도별 장애학생 문화예술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시·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수립 시, 체육교육 내실화 계획 포함

■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우선 배치·확대

■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및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 장애·비장애 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훈련 또는 경기를 진행하는 스포츠 프로그램(통합축구, 통합농구, 통합볼링 등)

**<참고> 체육지원 활동 예시**

- ▸ 통합스포츠 : 통합농구, 통합축구, 통합배구 등
  ※ 스페셜올림픽코리아(http://www.sokorea.or.kr)
- ▸ 뉴스포츠, 통합체육 프로그램, 패럴림픽 종목 활용 등
  ※ 대한장애인체육회(http://www.kosad.or.kr)
- ▸ 토요스포츠클럽, 장애학생 체육교실, 스포츠 재능반 운영 등

※ 교육청별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지역별 특색있는 장애학생 체육지원(통합스포츠 운영 학교 공모 등) 강화 노력

- 토요스포츠클럽, 스포츠 재능반, 패럴림픽 종목 활동 등 장애유형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 관련 직무연수 운영

※ 시·도교육청 연수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권장

■ 일반체육교사, 스포츠강사 등에 대한 장애이해교육, 특수체육 등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실시

※ 스포츠강사 등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인력이 직무연수를 이수할 경우 재채용 시 우대 권장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교육청 거점 교육기관 확대 및 학교별 예술동아리, 영화·연극 관람 등 문화향유 기회 확대 조치

② 교육청별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지역별 특색있는 장애학생 체육지원(통합스포츠 운영 학교 공모 등) 강화 노력

③ 국립특수교육원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협업하여 운영하는 통합체육 직무연수 과정에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④ 한국문화예술위원회(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등 유관기관의 장애학생 지원 사업 적극 활용

# Ⅲ.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 Ⅲ.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추진목적**

- **학생참여 및 활동 중심의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 혁신**
-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 및 진로설계 지원 강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대상 자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의2(자유학기 활동)

###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 운영 지원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및 확대에 따른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우수 운영 모델을 발굴·보급*하고, 다양한 운영 방안 모색

- 특수학교 여건, 장애유형 및 정도,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교수준 교육과정 재구성

* 특수학교 자유학기·자유학년 연구학교 : ('17년) 25교 → ('18년) 11·4교

※ 기본 교육과정 운영 특수학교: '16~'17년에 자유학기를 운영하지 않은 학교는 '18년에 중학교 3학년을 반드시 자유학기제 시행에 포함

■ 특수학교 자유학기 확대를 희망하는 학교는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특수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기) 등 활용

- '18년부터 희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자유학기 활동 221시간 이상 확보

■ 시·도교육청 중심의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체계 확립하고, 교원 및 학부모 인식 개선을 통한 참여 공감대 확산

-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원 연수, 학부모 지원단 운영,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컨설팅 등을 통한 교실 수업 및 자유학기 활동 지원 강화

- 교원 및 학부모에게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2) 특수학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장애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학생중심의 수업 활성화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 방법 적용으로 학생이 즐거운 교실수업 개선

- 학교별 여건에 따른 교과협의회, 교사연구회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 구성 지원

■ 담당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단계별 맞춤형 교원 연수* 및 특수학교 자유학기 프로그램 개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권역별 워크숍, 국립특수교육원 집합·원격 연수, 수업콘서트, 성과보고회 등 참여

** ('17년) 국어·사회, 수학·과학, 안전생활, 경제생활 등 학생 워크북 및 교사용 지도서 적극 활용

### 3)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

■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양질의 체험처 및 프로그램 확충으로 학생 체험활동 지원 강화

-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교육청 및 지자체, 대학 등이 참여하는 진로체험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중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계적 지원
- 특수학교별 여건에 따라 일회성 체험이 아닌 교실수업과 연계된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설계 지원

※ 꿈길, 학교 내 자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진로체험버스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 '18년부터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에 '꿈길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여 온라인 매칭 기능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안전한 체험처 관리 및 체계 확립

- '진로체험인증제' 인증기관 확대 및 학교의 체험 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 등을 통해 체험의 질적 개선 도모
- 체험활동 사전-운영-사후 단계별 점검을 통해 안전성 제고

###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시·도교육청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인력 확충 및 담당자 지정·운영**

② **'시·도교육청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자유학기 운영 지원

※ 자유학기제 추진단 구성·운영, 연구학교 운영, 각종 자료 개발·보급 및 연수·컨설팅, 지역사회 체험자원을 학교와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예산 등 포함

③ **시·도교육청 단위 컨설팅단 구성·운영**을 통해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실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 자유학기 활동 운영 등 지원

※ 단위학교 당 연 2회 이상 컨설팅 지원 권장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수업연구회' 등 수업·평가방법 개선, 체험활동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등을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지원**

※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유학기제 참여 지원

④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진로체험센터 등과 **협업체계 구축** 및 기업, 대학 등과 **자유학기제 지원 업무협약 확대**

⑤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특수학교 자유학기 활동 지원을 위한 체험처 발굴·관리 지원

⑥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점검, 사고 대응체계 마련 등 **안전한 체험활동 대책 수립**

⑦ 국립특수교육원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원격·집합연수, 자유학기제 수업 콘서트, 권역별 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 권장

## 2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추진목적**

-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 강화로 특수교육대상자 직무역량 강화 및 진로의 다양화**
-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확립으로 학교에서 사회로 안정적인 전환 성과 도모**

※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제19조(전공과의 설치·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6조(학교기업)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 등)~제41조(학교기업 운영 세칙)

###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에 집중학년(기)제 운영 도입·확대 등을 통한 진로 인식 및 탐색 기능 강화

■ 고등학교 과정 이상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실습*, 고용지원 등을 위한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등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현장실습과 관련된 세부 추진 내용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안내 예정

■ 지역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전공과 설치 확대 및 자립생활훈련·직업재활훈련 제공을 위한 운영 형태 다양화

■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교 내 진로탐색기능 강화 및 교과·진로 융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직업교육실 환경 조성 등 전문화 지원

■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연수 및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

### 2)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 지역사회중심에서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의 활성화

- 장애학생의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가 원스톱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연계·협력 강화

- 지역사회 및 산업체 현장실습 시 학생의 직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학생의 안전 대책을 포함한 교사의 임장지도 철저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직업교육 전문기관이 없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로·직업교육 지원
- 지역사회 사업체,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체제 구축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지원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발달장애훈련센터,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력체제 구축

### 3)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과성 확대

■ 특수학교 학교기업이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재학생 및 인근 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상시 지도·감독 강화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가 지역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및 컨설팅 등 거점학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학교기업과 거점학교에 전담 부장교사 배치, 특수교사 추가 지원, 담당교원과 시·도교육청이 협의하여 전보유예 조치 등 학교기업과 거점학교 운영 담당 교원의 업무 경감 및 인력 지원 방안 마련

- 학교기업의 회계, 영업, 홍보, 취업지원 등 지원·보조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과 거점학교의 사업체 발굴, 취업지원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직업교육 지원 인력 배치

■ 우수 업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교육·복지·노동 협업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 4)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

■ 학교·공공기관·대학 내 일자리 참여 확대

- 직무 개발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 대학 및 교육기관 내 장애학생 고용 창출

- 일자리 참여 기관 담당직원의 역할 확대를 위해 장애이해 교육 실시

■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 확대

- 사업수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에 대한 안내·연수 및 참여 학생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참여 학생 사전교육은 시·도교육청 계획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사업수행기관이 추진하며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 자체예산 사용

■ 관계부처(기관)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발굴 및 참여 확대

- 관계부처(기관)와 연계한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으로 장애학생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기회 확대

### 5)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성과관리 강화

■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강화

- 관계기관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학교기업과 거점학교 현장 점검 및 운영 실적 평가 실시

- 시·도교육청별 학교기업·거점학교 운영의 질적 제고 및 자체 성과보고회 개최

■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개인별 자립생활훈련 및 직업재활훈련 성과관리

- 취업률 외에 다양한 개인별 성과지표를 활용한 성과관리 후 그 결과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에 반영

■ 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졸업 후 최소 3년까지 사후관리 실시

- 취업자에 대한 적응지도, 상담, 취업유지 여부 확인 등 장기적인 고용안정 관리

###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시·도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및 교육청 자체 사업 등을 포함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계획' 수립·제출('18. 3월)

- 시·도교육청 차원의 특수학교 학교기업과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예산 확보, 지도·감독 등 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 '학교·공공기관·대학 내 일자리',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 등 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

② 개별화교육계획에 학생의 진학 및 성인생활 준비를 위한 '개별화전환교육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권장

③ '전공과 교사 수업연구회' 등 진로·직업교육 관련 연구회 육성·운영

④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자 진로 현황 파악('18. 4월) 및 취업자의 직업유지 현황 제출('18. 10월, '19. 2월)

⑤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인별 자립생활훈련 및 직업재활훈련 성과관리 권장 및 시·도별 적용 결과 제출(전공과 설치 학교. '18. 11월)

⑥ 성과지표를 활용한 특수학교 학교기업·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성과 관리 및 결과 제출('18. 11월)

⑦ 시·도별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시 실습지도 및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한 추진 방안 마련

⑧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운영 현황 제출('18. 12월)

# 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추진목적**

- **장애대학생 교수·학습 지원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학습권 보장**
- **장애대학생 진로·취업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진학 및 취업기회 확대**

※ 특수교육법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31조(편의제공), 제32조(학칙 작성)

## 1)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전문성 보유 인력 확보 및 정규인력 배치

- 특수교육, 사회복지, 상담심리 등 관련 전공자 채용 확대
- 정규인력 배치 확대를 통한 장애학생 지원 안정화

## 2)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내실화

■ 중증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한국수어통역사, 점역사, 속기사 등 전문도우미 인력 확대 및 유관기관 연계 강화

■ 장애대학생 도우미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철저

## 3)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우수 장애대학생 장학금 및 취업기회 제공, 연수기회 확대 등 지원 다양화

-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및 대학·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대상 학생 선발 시, 장애학생을 우대 선발

* 전공 연계 해외 현장학습을 통한 대학생 글로벌 직무역량 강화 및 진로 설계 지원 프로그램 지원

##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에 대한 대학 정보 제공확대

■ 장애학생 대입정보 및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체계 구축현황 정보 제공 강화*

*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 전문대학 포털(www.procollege.kr) 등 활용

### 5)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 강화

■ 3년마다 실시되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 실효성 강화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개선요망 대학 컨설팅 실시
- 2017년 평가결과 분석 및 대학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

■ 평가결과 공표 경로의 다양화를 통한 대학의 책무성 확보 유도

※ 2017년부터 평가결과 공표 의무화(「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제2항)

#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 기축

**추진목적**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으로 국가 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반 구축**
-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 평생교육법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국정과제 51-2 (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

## 1)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추진체제 구축

■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국가 책무성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제 확대**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기반 구축

  * '18년부터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 전담 조직 신설**

■ 국가 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계획 수립·시행**

- **행정기구, 전담·지원기구, 심의·협의기구 간 유기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매년 1월)
- **관계부처 협업**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교육-고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 '17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운영 현황

| 구분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
|---|---|---|
| 주무 부처 |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광역·특별시·도 |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부, 교육청 |
| 서비스 대상 | · 발달장애인 및 부모 | · 발달장애인 졸업생, 재학생 |
| 기관 성격 | · 복지서비스 연계기관 | ·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 |
| 설치 현황 | · 중앙 1개소 (한국장애인개발원)<br>· 지역 17개소 (광역시·도) | · 4개소(서울, 대구, 인천, 광주) |
| 주요 서비스 | · 복지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br>·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지원<br>· 발달장애인 후견인 감독 지원 | · 고용연계 직업훈련 프로그램<br>· 직업체험 |

■ **지역 실정을 감안**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계획** 수립·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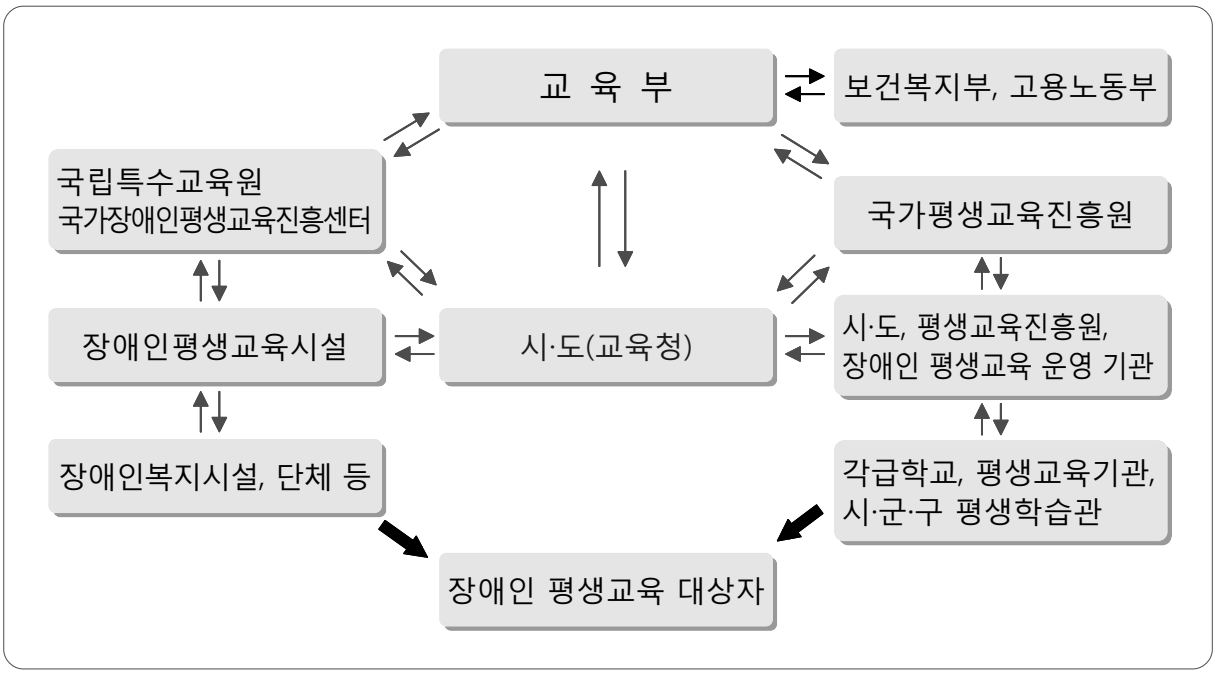
-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의 학력, 욕구, 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도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계획'** 별도 **수립** 권장

※ 계획 수립 시,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참여 보장

■ 체계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 추진체제** 구축·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 **중앙·지역단위 역할 강화 및 유관기관 간 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정책추진 시너지 효과 제고

- 장애인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모델 개발



## 2)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역할 정립 및 기능 강화

■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

- **매년** 장애성인의 **교육적 요구, 참여 실태, 학습 환경, 학습역량, 사회참여 및 인식 등 현황파악·진단**

※ ('18) 현황조사 도구 개발, 시범 조사→('19) 예비조사→('20~'22) 매년 전국 현황조사

■ 평생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의 요구에 따른 **장애영역별 맞춤형 교재·교구 개발**

※ ('18~'22)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10종 이상 개발

- **발달장애인**의 자질향상과 자아실현 도모를 위한 **영역별* 평생교육과정 연차적 개발**

* 학력보완, 문자해독, 직업능력, 인문교양, 문화·체육·예술, 시민참여 등

■ 장애인 평생교육 내실화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을 위한 연수** 추진 및 장애인의 정보제공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 ('18) 전문성 향상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19) 연수 프로그램 운영→('20~'22) 원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웹사이트 구축 등 집합연수와 원격연수 병행 추진

■ 체계적·안정적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성인야학, 장애인복지관,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등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 **매년 2회 이상 협의회·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3)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교육지원 강화

■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 교육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 학령기 의무교육(초·중·고)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에 대한 **학력인정 맞춤형 교육 및 지원 확대**

* 2014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 결과, 전국 등록 장애인 250만여 명 중 **약 60% 이상인 140만여 명이 중졸 이하**

※ ('18)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맞춤형 학습시스템 개발 연구 →('19)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20~'22) 전국 확대 운영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학력인정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설**
- **온라인 콘텐츠 활용** 또는 **지역 기관*의 일정 수준 이상 과정을 위탁 프로그램으로 지정**

  * 학교형태 등 평생교육시설(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포함), 학력인정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등

  ※ (절차) 학습지원프로그램 이수, 방송통신중 과목 등 다양한 학습경험 인정 → 이수 시수 인정 → 학력 인정

■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확대·보급**을 통한 학력보완 기회 제공

-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해교육 자료 개발 추진

■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통한 장애인 **교육지원 확대 방안 마련**

- **수어통역 등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학력취득 지원 확대**

■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참여 학생 수: ('17) 1,821명 → ('18) 1,871명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업무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한 **교육청별 업무관리 지침**(편람, 매뉴얼 등) **현행화**
- **학교형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집행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

### 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확대

* 프로그램 수: ('17) 629개 →('18) 650개

- 기존 평생교육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접근성 제고**
- **장애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확대

  ※ 지역 여건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시·군·구별 1개소 이상) **확충**·운영

■ **원격시스템을 활용**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및 대학별 강의 동영상* 등 학점인정기관의 **웹 접근성 강화** 방안 모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운영 KOCW(http://www.kocw.net),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운영K-MOOC (http://www.kmooc.kr) 등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지역 실정을 감안**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계획** 수립·운영

② 체계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 추진체제** 구축·운영

③ **장애인 문해교육 및 학력인정 프로그램 확대·보급**을 통한 학력보완 기회 제공

④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통한 장애인 **교육지원 확대 방안 마련**

⑤ 지역 여건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시·군·구별 1개소 이상) **확충**·운영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집행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

⑥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인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 및 홍보방안 강구

# Ⅳ.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 Ⅳ.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구축

## 1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추진목적**

◎ **일반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장애이해교육 강화 및 장애인식 개선 홍보·교육 콘텐츠 확산을 통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21조(통합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동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 1)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유·초·중·고 학생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 수업 실시 확대

  * 특별기획방송 : 대한민국 1교시(KBS 라디오), 장애이해교육 드라마(KBS 2TV) 등

- **장애이해교육 우수사례 및 백일장, 홍보 동영상 공모전 등**을 통해 **일반학교 장애이해교육 참여 유도**

■ 일반학교 구성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지원**

  * 장애이해교육 전문강사, 장애인(학생) 예술가(단) 등 활용

  ※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횟수: ('18~'22) 1,190회

- 장애 체험 활동, 관련 행사 참여 등 **체험중심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소속 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 기관별 직장교육 **연간계획에 장애이해교육 일정 포함**

- **전문강사**(장애인 당사자 포함), **교육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내실 있는 교육 실시

## 2)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홍보 강화

■ 유·초·중등학생 및 일반국민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및 홍보 콘텐츠**(동영상, e-book, 리플릿 등) 제작·활용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 **장애이해교육 및 홍보 콘텐츠 확산**
- 범국민 대상 **SNS 등을 활용**한 교육·홍보용 콘텐츠 전파

※ 홈페이지, 전광판, 블로그, SNS 등에 교육·홍보 콘텐츠 게재 등

■ **관계부처 협업**으로 TV, 대중교통,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 **긍정적 장애인식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홍보영상, 포스터 등) **송출**
- **범부처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장애인식 개선 관련 **공익광고 및 홍보콘텐츠** (바이럴 영상*, 포스터 등) **지속 노출**

* 소셜 미디어를 통해 거미줄처럼 연결된 네트워크 속의 개인들에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기발하게 만든 영상

**시 . 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

- [대한민국 1교시(KBS 공동기획)] 장애인 주간에 교육부 공문(시달 예정)을 참조하여 지정 일시에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

② 시·도교육청과 그 소속·산하기관 직원이 연 1회 이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

③ 장애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 콘텐츠 활용 및 확산 방안 마련

## 2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추진목적**

- **장애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과 자기보호 능력 신장을 위한 인권 및 성교육 내실화**

※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제3항,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과 지역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8명 이상)

※ 특수교육지원센터장, 장학사, 특수교사 각 1명, 특수학교(급) 교장(감) 1명,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성폭력수사팀장) 등 1명, 장애학생 보호자 1명, 성교육 전문가 1명, 상담 전문가 1명, 기타 법률 전문가, 사회복지사, 장애인권 전문가, 의료 전문가 등

■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기능 수행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육, 연수 및 지역 내 학교 지원 활동

※ 비장애학생, 장애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 시 장애학생 인권 관련 주제를 포함하고 인권지원단의 분야별 전문가 강사 활용 등

- 매월 1회 이상 일반 및 특수학교 등을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실시 및 결과 보고

※ 지역 인권지원단은 지원 결과를 매월 30일까지 시·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제출

※ 시·도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원 결과를 익월 5일까지 국립특수교육원에 제출

■ 유관기관 연계(관할 경찰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를 통해 장애학생 학교(성)폭력 피해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진술조력 기능 포함

- 장애학생 학교(성)폭력 사안과 관련된 경우, 전담기구 사안조사 및 자치위원회 심의에 인권지원단 위원 등이 자문위원 또는 참고인으로 참여

## 2)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초·중·고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 연 2회 실시 정착화

※ 국가인권위원회(어린이·청소년인권교실 콘텐츠, 인권문화마당-별별이야기 등) 및 국립특수교육원(장애인권교육을 위한 학습만화콘텐츠 초등용, 중·고등학생을 위한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자료 활용

- 비장애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에 대한 교육 실시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등 인권관련 자료 활용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권리 인식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5종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신지체·정서장애, 학습장애) 등 인권관련 자료 활용

■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수립 권장

-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마련 권장

- 학교 구성원 간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1교 1특화프로그램* 운영

*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학교(급) 규칙 만들기 및 생활수칙 실천 운동 등

■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교사와 협업 체계 구축

-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연극, 통합동아리(장애인 인권 UCC 제작,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인권 관련 공모전 및 행사 참가 등) 등 운영

## 3)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 성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자기보호 역량 강화

※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www.nise.go.kr) 활용

■ 시·도교육청별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 및 우수 자료 현장 보급

### 4)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의 협력을 통해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edu.humanrights.go.kr) 자료 활용

### 5) 문제행동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통합교육지원팀 운영**을 통해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 **자신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한 **기능평가 및 문제행동 대처의 어려움 해소** 지원
- **특수교사, 일반교사, 부모 등**에게 **적절한 대처 및 행동중재 방법 등**에 대한 **정보와 상담 제공**

※ 2016 문제행동 중재 프로그램 운영 결과(교육부, 2016),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사례별 중재 가이드북·매뉴얼(교육부·부산광역시교육청, 2014) 활용 안내

■ **가족과 전문가 협력**을 통한 **문제행동 예방 및 조기 대처** 지원

-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일관된 행동중재** 실시
- **심각한 문제행동**의 경우, **보건교사와 협력, 의사 및 관련 전문가 등**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연계 지원 확대**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시·도교육청별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실시 계획 수립('18. 2월)

② 시·도교육청별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계획 수립('18. 2월)

③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계획 수립('18. 2월)

④ 각급학교에서 장애학생 대상 성범죄 발생 시 기관의 장 또는 교직원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및 관할청 학교폭력 담당과에 보고

- 학교(성)폭력 발생 시 사안처리는 학교폭력 담당과,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2차 피해예방은 인권지원단에서 지원하도록 조치

※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전담기구 및 자치위원회에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행동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할 것(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 p58)

⑤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학교의 장은 학교(성)폭력 예방 교육 계획 수립 시 장애학생 인권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⑥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자료는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www.nise.go.kr)를 통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⑦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통합교육지원팀 운영을 통해 문제행동 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 3 장애학생 안전 강화

**추진목적**

**특수학교(급)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의식 고취**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안전 및 편의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 운영

■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학교 주변 통학로에 장애학생 보호 인력 배치·운영, 장애학생 자기보호 능력 계발을 위한 교육 계획 등 포함

■ 장애학생 이동 및 안전 보장을 위한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 환경 개선

## 2)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 교육 실시

■ 교육현장 특성*을 고려한 상황별(교통, 화재, 재난) 안전교육 수시 실시

* 해당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 및 정도, 주변환경 등이 고려된 위험요소 등

■ 재난상황 대비 장애 유형별 위험요소 사전파악 및 상황별 매뉴얼 재정비

##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 시설 안전점검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특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기준에 미달하는 특수학교 시설 개선 예산 우선 지원

■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 예방·관리 철저

■ 특수학교(급)의 **노후 및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재난위험 시설 해소 지원

■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학생들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특수학교의 간이체육시설, 옥외체육관 등 설치 지원**

### 4) 학교주변 위험환경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 학교보건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공단지역 악취·소음·먼지 등 피해, 송전탑 설치 지역 등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학교 안전지킴이 확대 등 장애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 등과 협의체 운영 지원

②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애학생 학년별 안전교육(교육시간,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등) 및 학생·교직원 등에 대한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 결과 보고 철저

③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병 발생 시, 보고 철저

④ 특수학교(급) 노후시설 개선 및 수업환경 개선

# 4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추진목적**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기회 확대 및 체계적 지원기반 마련**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동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체계 구축

- 영유아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체계를 통해 장애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복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와 연계 강화

■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파악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 및 상담,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적극 홍보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을 위한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홍보 및 진단·평가 지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

- 취학의무 특수교육대상아동에 대한 적령 취학 독려

※ 시·도별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명단은 별도 송부(보건복지부 제공)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경우,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편성·운영

※ 학기 중 무상교육 요청 특수교육대상영아는 수업일수 150일 미만이라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가능(특수교육법 제28조 1항, 2항,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 참조)

※ 보건복지부의 무상보육료와 중복지원 불가

###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진단·평가 수행,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우수교원, 의사, 치료사 등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으로 장애영역별·학교급별 진단·평가팀 구성·운영
-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확충 및 활용 지원 강화

### 3)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배치 절차 준수

| | |
|---|---|
| 보호자 또는<br>각급학교의 장(보호자동의) |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평가 의뢰 |
| ⇩ | |
| 교육감 또는 교육장 |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
| ⇩ | |
| 특수교육지원센터 | ▣ 진단·평가에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br>▣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br>▣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 ⇩ | |
| 교육장 또는 교육감 |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br>-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br>※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br>※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br>▣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 ⇩ | |
| 학생 또는 보호자 | ▣ 배치된 학교에 취학 |

■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 등)할 필요가 있으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 4)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영아의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해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 **유치원 - 초등학교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진학 과정 지원

- **장애를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 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안내

### 5)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의무교육 대상 중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취학 및 재취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2항에 의거 학년 결정

■ 과연령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지 않고, 의무교육 기간을 경과한 자나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학령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연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
- 시·도교육청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교육기회(평생교육 포함) 제공을 위한 방안 강구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15.8.19.)

### 시 . 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 특수교육대상의 조기발견을 위해 읍·면·동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② 홍보책자 제작 활용 및 홍보 적극 추진

-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선정 및 배치 절차, 지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교육기관 등에 관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등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모든 관계자들에게 적극 홍보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상시 홍보

③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철저

-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관련 지침서를 마련하여 교육지원청, 일반학교, 특수교육기관 등에 시달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적합배치 가이드북(교육부·경남교육청, 2017)' 활용

④ 구비서류 간소화

- 학부모, 담임교사로부터 과다한 구비 서류 요구 금지

⑤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

- 의무교육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학생 정보관리 공유 등 특수교육대상유아 관리 철저 및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방치되지 않도록 취학 절차 등에 대해 적극 홍보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은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지침'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활용
- 특수교육대상유아 시·도교육청별 의무교육 지원 실태조사 결과 제출('18. 5월)

  ※ 초등학교 취학유예 후 유치원교육을 받을 경우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 불가

# 5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추진목적**

- **전일제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도모**
- **'나홀로 가정'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돌봄 지원 및 학생안전 관리를 통해 학생 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6호,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 1) 방과후학교 운영

■ 지원이 필요한 가정(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중 희망자 우선 지원

■ 시·도별 지침에 의거 지원규모 및 우선 지원 대상 선정

※ 국립특수학교(급)는 국고 일반회계(장애학생 교육지원 사업)로 별도 지원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2) 돌봄 지원체계 강화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돌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

■ '나홀로 가정' 특수교육대상자가 방치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사회 실정을 고려한 돌봄 지원체계 강화

※ [국정과제] (49-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 방안 병행 추진(교육부)

- 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 내 공공 돌봄 인프라 활용을 통한 돌봄 지원 활성화

### 3) 방학프로그램 운영

■ 특수학교(급)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한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권장

※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생과 통합하여 활동할 수 있는 방학프로그램 발굴 및 참여 확대

- 예비특수교사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봉사활동 참여 권장

■ 유관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4) 방과후 교육·돌봄 프로그램 담당자 지원

■ 방과후 교육·돌봄 프로그램 담당 인력 연수 등 역량 강화 지원 및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시·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학생 대상 방학프로그램 및 행사 등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 추진

②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시·도교육청 주관 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 6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추진목적**

**특수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질 제고를 위한 지원체제 강화**

※ 특수교육법 제3, 5, 6, 21, 27, 28조,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 제5조

## 1)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 확충 및 역량 강화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전담 장학관·장학사 배치 및 지원 기능 강화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 배치 확대

※ 시·교육청별로 배정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특수교육 전문직을 교육지원청에 적정 배치

■ 교육과정 연수 등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역량 강화

## 2)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특수학급 교실 기준 면적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편리하도록 배려하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 설치

■ 특수학급 시설·설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운영비'에 반드시 우선 편성·지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편성·집행 지침에 포함

■ 특수학급 지원을 위한 **목적성 예산 지원**

■ **국립대학 부설학교 특수학급에 대한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특수학급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방과후 교육 등 각종 교육활동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

■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 특수학급에 **가급적 경력 교사를 배치**하고, 신규 교사 배치 시 **경력 교사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멘토교사제** 활용
- 교사 간 정보와 자료 공유, 연구 등을 위한 **자생적 특수학급 수업연구회 운영 활성화 지원**

**시 . 도교육청 조치사항**

① **특수교육 여건 개선**: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재정 건전성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리 · 감독 철저

② **특수교육 전담 인력 확충**: 시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전담 부서 담당 인력 확충 등의 노력으로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 강화

③ **특수학급 지원 강화**: 운영 내실화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 및 가급적 경력 교사 배치

④ **국립대학 부설학교 특수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배치, 특수학급 시설 · 설비 구입, 특수학급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등 **적극적인 행 · 재정 지원**

※ 초 · 중등교육법 개정('12.3.21)으로 국립학교 장학지도 권한이 관할 시도교육감으로 이양 (초중등교육법 제7조)

# V. 2018년도 특수교육 관련 행사

# V. 2018년도 특수교육 관련 행사

## 1 특수교육 관련 행사

### 1) 2018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 일　　시 : 2018. 9. 4. ~ 5. (예정)

■ 장　　소 : 서울 The-K 호텔

■ 주　　최 :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게임즈(주)

■ 후　　원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내용 : 특수학교(급) 학생 정보경진대회,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등

■ 참석대상 : 특수학교(급) 학생, 일반학생, 학부모, 특수교육교원,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 담당자 등 약 1,500명

### 2) 제4회 대한민국어울림축전

■ 일　　시 : 2018. 9. 18. ~ 20. (예정)

■ 장　　소 : 송도 컨벤션센터(예정)

■ 주　　최 : 교육부

■ 주　　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주요내용 : 미정

■ 참석대상 : 특수학교(급) 학생, 일반학생, 교원, 학부모 및 일반인 등(약 100,000명)

### 3) 진로드림 페스티벌

■ 일　　시 : 2018. 10. 4. ~ 5. (예정)

■ 장　　소 : 무주태권도원(예정)

■ 주　　최 : 교육부

■ 주　　관 : 전북교육청

■ 대상영역 : 시・청각・지체장애

■ 참가대상 : 전국 시・청각・지체장애 특수학교(중・고등・전공과) 및 특수학급(중・고등・전공과) 학생

### 4) 2018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 일　　시 : 2018. 5. 15. ~ 18. (예정)

■ 장　　소 : 충청북도 일원

■ 주　　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 주　　관 :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 경기종목 : 골볼, 보치아, 수영, 씨름, 육상, 축구, 탁구, e스포츠, 실내조정 등

■ 참석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 특수교육교원 등